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

2020. 2.



순 서

I. 수립 배경 ···································
Ⅱ. 기본계획 개요2
Ⅲ. 낚시현황 및 정책환경3
Ⅳ. 정책방향 ····································
♡. 세부 추진과제16
1.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16
2.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19
3. 행복한 낚시공간 확충 22
4.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25
VI. 향후 추진일정 28

Ⅰ. 수립 배경

- □ 낚시는 국민의 대표적 해양례저 활동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 담당
 - 해양관광 관련 인프라·콘텐츠·산업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 활동 중 낚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
-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낚시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
 - * 낚시인구(만명) : ('00) 500 → ('10) 652 → ('15) 677 → ('16) 767 → ('18) 850
 - 또한, 여성과 어린이의 낚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낚시수요도 다양화
- □ 민물낚시의 경우 지역축제와 연계*되고 바다낚시는 **어촌관광 상품** 으로 변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 * 화천 산천어 축제, 청평·파주·평창 송어 축제, 양평·인제·강화 빙어 축제 등 개최
- □ 그러나, 낚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낚시 활동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발생
 - * 낚시어선 사고건수(건) : ('15) 207 \rightarrow ('16) 209 \rightarrow ('17) 266 \rightarrow ('18) 245
 - 특정 어종(주꾸미 등)에 대한 낚시 포획량 증가로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낚시인·어업인 갈등 심화
 - →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소득 증대 도모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Ⅱ.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5년** 마다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
-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어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 ('12.9.10 시행)하고 제1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13.12)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4년
- 공간적 범위 :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
- 내용적 범위
 -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추진경과

-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수행('18.12~'19.12)을 통해 기초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검토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낚시인구, 낚시산업 규모 추정 및 낚시인 인식도 조사 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업계 현장조사(10회), 전문가 자문회의(2회)를 통해 정책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Ⅲ. 낚시 현황 및 정책환경

1. 낚시의 특성

- □ (대중성) 낚시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레저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레저 선진국에서 폭넓은 시장을 형성
 - 특히, 해수면이나 내수면을 활용한 레저 활동 중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제약이 가장 적은 활동
- □ (다양성) 낚시를 접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삼면이 바다)하고 있어 내수면과 바다(동·서·남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낚시 활동이 가능
 - 또한, 낚시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역과 사용도구 및 장소·수단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의 낚시를 즐길 수 있음

【 낚시의 종류 】

대상지역	사용 도구	낚시 수단
바다낚시	민장대낚시 , 릴낚시 , 원투낚시	배(선상)낚시 , 갯바위낚시 , 방파제낚시
민물낚시	대낚시, 릴낚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견지낚시	저수지낚시 , 하천낚시 , 얼음낚시 , 보트낚시

- □ (의존성) 기상여건(날씨, 바람 등)과 환경변화(물 때, 수온, 수위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으며, 대상 어종에 따라 특화된 장비를 사용
 - 계절별 낚시어종이 다양하고 실내 및 얼음낚시터가 존재하여 4계절 다양한 낚시 활동이 가능(타 해양 스포츠 대비 계절성 적음)
 - * 겨울철에도 볼락ㆍ우럭, 빙어ㆍ송어 등 주요 어종에 한해 꾸준히 낚시 가능
- □ (**수산자원 영향**) 내수면과 바다에서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활동으로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 고갈 우려
- □ (**안전사고**) 무리한 출조와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2.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현황

- □ 낚시인구
 - (현재) 낚시 선호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낚시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18년말 기준 낚시인구는 850만명으로 추정(연평균 3.9%씩 증가)
 - * 1년에 3회 이상 낚시 활동을 한 국민을 낚시인구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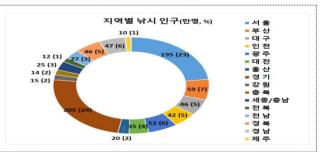
【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이(만명,%)】



또한, 전 연령이 골고루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지역에 낚시인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 '18년 연령별/지역별 낚시 인구 추정(만명, %)】





○ (전망) 기존 낚시인구('00년~'18년)를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3.9%) 및 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24년 낚시인구는 약 1,012만명으로 전망

【 낚시인구 전망(만명)】



□ 낚시산업

- 해양수산 특수분류 산업통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8년 기준 국내 낚시산업 시장 규모는 2조 4,358억원으로 추정
- 낚시산업은 크게 낚시 서비스업과 낚시 연관 산업으로 구분되며,
 낚시 연관 산업의 매출액이 낚시 서비스업 보다 약 6배* 높은 수준
 - * 낚시 연관 산업에서는 기자재 도소매업(54%)이 낚시 서비스업에서는 낚시 어선업(74%)의 매출이 높은 비중 차지

【 '18년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추정)(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개)	매출액(백만원)	비중(%)
	합 계	8,849	2,435,802	100.0
	소 계	5,486	375,209	15.4
낚시	낚시터 운영업	935	79,042	3.2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4,543	278,513	11.4
낚시정보 서비스업		8	17,654	0.7
	소 계	3,363	2,060,594	84.6
	낚시선 건조 수리업	5	2,258	0.1
낚시 연관	낚시용구 제조업	362	920,712	37.8
^{한편} 산업	낚시선 부품 제조업	9	6,293	0.3
	낚시용 기자재 도소매업	2,958	1,107,032	45.4
	기타	29	24,29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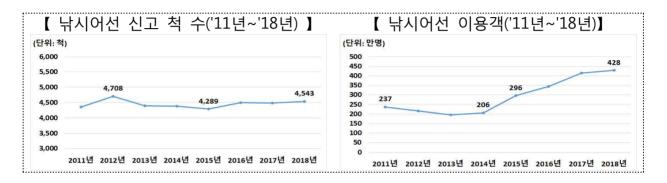
* 기타에는 낚시선 부품 도소매업 및 낚시용품 수리업 등이 포함되며 낚시미끼 생산업은 제외

※ 낚시 서비스업 및 낚시 연관 산업 시장 규모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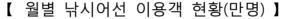
- 낚시터 운영업
 - ▶ '17년~'18년 기준 낚시터 표본 업체수(201개소) 매출액: 16.992(백만원)
 - ▶ 모집단('18년 기준 935개소) 가중치: 4.65
 - ▶ '18년 낚시터 운영업 규모: 16,992(백만원) X 4.65 = 79,042(백만원)
- 낚시어선업
 - ▶ '18년 척당 평균 매출액 추정: 60.4(백만원) X 1.015 = 61.306(백만원)
 - ▶ '18년 낚시어선업 규모: 61.306(백만원) X 4,543(척) = 278,513(백만원)
- 낚시정보 서비스업, 낚시선 건조 수리업, 낚시용구 제조업, 낚시선 부품 제조업. 낚시용 기자재 도소매업. 기타
 - ▶ '17년 업종별 업체수는 '18년의 경우도 일정하다고 가정
 - ▶ '18년 매출액은 '16년~'18년 낚시인구 연평균 증가율 5.41%와 '17년 대비 '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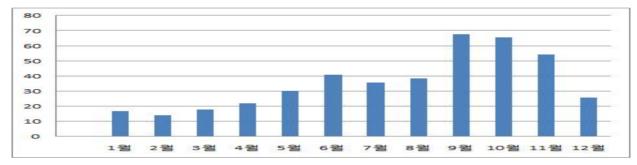
□ 낚시어선

- (선박) 최근 10년 간('11년~'18년) 약 4,500여 척으로 유지되고 있 으며 '18년 기준 낚시어선은 4,543척
- (이용객) '15년 이후 낚시어선 이용객은 증가 추세로 '18년 기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428만명



○ (이용 현황) 주꾸미 낚시를 위해 가을철(9~11월)에 낚시어선 이용 비중이 높으나, 저수온기(12월~익년 2월)에는 낚시 활동이 둔화





- (안전사고) 최근 4년간('15년~'18년) 안전사고는 이전 4년간('11년~'14년) 대비 발생 건수, 사망·실종자 등이 2배 이상* 발생
 - * 발생 건수 243% ↑ (382→927), 사상 사고 286% ↑ (28→80), 사망·실종자 500% ↑ (7→35)

【 낚시어선 안전사고 현황 】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발생 건수(건)	1,309	103	107	77	87	207	209	266	245
사상 사고(건)	108	8	2	9	9	10	23	31	16
인명 피해(명)	373	41	8	26	43	51	69	94	41
사망자	36	3		1		17		15	
실종자	6	1			2	3			
부상자	331	37	8	25	41	31	69	79	41

□ 낚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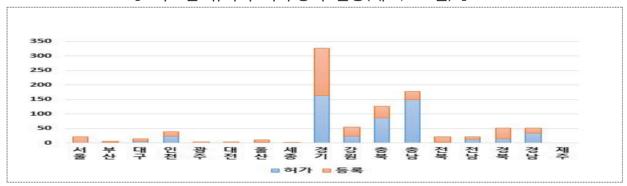
(전체) 가족단위 근거리 낚시 패턴 변화 등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 증가, '18년 기준 낚시터 수는 935개소(허가 521, 등록 414)

【 낚시터 허가·등록 현황(개소)】

7 8	허가·등록			급 허가·등록 허가				등록	
十 正	'16	'17	'18	'16	'17	'18	'16	'17	'18
합 계	774	877	935	463	495	521	311	382	414

- (지역별)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 충북·충남 지역의 낚시터가 전체 낚시터에서 높은 비중('18년 기준 67%) 차지
 - * 경기도 327개소, 충남 177개소, 충북 126개소, 강원도 55개소 등

【 시도별 낚시터 허가·등록 현황(개소, '18년)】



○ (유형별) 도심에서 가깝고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낚시터의 수요 증가로 실내 낚시터가 크게 증가('17년 대비 43개소 증가)

【 실내·외 낚시터업 현황(개소, '18년) 】

구분	′17	′18	증가율(%)
합계	869	935	7.59
실내 낚시터	145	188	29.66
실외 낚시터	724	747	3.18

□ 낚시용품 산업

○ (수출입)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잠식으로 감소세이며, '17년부터 낚시용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커 무역적자 발생

* 수출(억\$) : ('03) 1.29억\$ \rightarrow ('09) 0.86억\$ \rightarrow ('16) 1.10억\$ \rightarrow ('17) 1.15억\$ \rightarrow ('18) 1.18억\$

* 수입(억\$) : ('03) 0.38억\$ \rightarrow ('09) 0.49억\$ \rightarrow ('16) 1.00억\$ \rightarrow ('17) 1.22억\$ \rightarrow ('18) 1.62억\$

- 낚싯대 1,167만\$(39%), 낚시릴 1,272만\$(35%)의 수입 증가*로 '18년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 * 낚시릴은 고품질의 일본 상품(전년대비 27%), 낚싯대는 저가의 중국 상품 (전년대비 44%) 수입 증가

【 낚시용품 수출입 현황(천\$)】

구 분	′03	′06	'09	'12	′14	'16	'17	'18
수 출 액	128,880	99,131	86,473	112,831	111,648	109,817	114,604	118,553
수 입 액	37,677	49,454	46,226	57,042	76,952	100,160	122,397	162,019

- * 낚시용품: 낚싯대, 낚시릴, 낚싯바늘, 낚시인조찌, 기타낚시용품(출처: 통계청, 관세청)
- □ (제조업) 낚시용품 362개* 기업 중 86%(311개)가 10인 미만 영세기업
 - * 낚시용품 제조업체: 낚싯대 78개소, 낚싯바늘 34개소, 낚시릴 32개소, 낚시찌 30개소, 낚싯줄 9개소, 낚시가방 13개소, 기타낚시용품 166개소('17년 기준)
 - 영세기업 위주로 자체 브랜드 없이 OEM 생산, 중저가품 생산에 의존하여 일본 등 선진국과는 기술·자본경쟁, 중국과는 가격경쟁에 밀림
 - 산업 특성상 스트림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나, 기업의 영세성,
 교류 부족 등으로 협력 미흡
 - * 낚시용품은 낚싯대와 낚시릴, 가이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하나의 완성된 낚싯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가 생산한 상품을 하나로 결합하는 여러 공정을 거침
- □ (유통업) 낚시용품 유통업체(도소매) 수는 2,958개소로 경기도(410개소, 14%)에 가장 많은 유통업체 분포

【 낚시용품 지역별 도소매업 현황(개소, '17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99	256	105	119	54	49	75	10	4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8	101	256	39	281	312	406	98	2,958

낚시의 SWOT 분석

S (강점)

- 1 바다·강·하천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낚시자원 보유
- 2 법률·기본계획 등에 의거한 체계적인 낚시 관리
- 3 대표적 여가활동으로써 낚시에 대한 두터운 수요층
- 4 세계적으로 우수한 낚시용품 생산 기술 보유
- 1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사고
- 2 노후화된 낚시시설과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인프라 미흡
- 3 국내 낚시용품 생산 대부분 영세업체 위주의 운영
- 4 낚싯대, 릴 등 낚시용품 핵심 소재의 높은 일본 의존도

W (약점)

り(기회)

- 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여가 시간 증가
- 2 도시어부 등 TV 프로그램 인기로 어린이·청소년·여성 낚시 관심 증대
- 3 다양한 낚시 수요에 따른 낚시용품 시장 세분화
- 4 낚시의류 등 고가의 낚시용품 구매 증가
- 1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 등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 2 같은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낚시인과 어업인의 마찰 발생
- 3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낚시인의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미흡
- 4 중국의 저가, 일본의 고가 상품 등 낚시용품 시장 내 경쟁 심화

T (위협)

3. 대내외 여건 및 전망

□ 대내여건

- (인구) 낚시인구의 모집단이 되는 전체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51,942천명('28)을 기점으로 감소할 전망
 - * 인구전망(천명) : ('18) 51,607 → ('20) 51,781 → ('30) 51,927 → ('40) 50,855
- (여가시간 등)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과 국민소득 향상('18년 3.3만\$)
- (낚시 인기 증가) 낚시 예능 프로그램 인기 등으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낚시를 통해 손맛과 입맛도 맛볼 수 있어 인기 증가
- (자원관리 필요성) 최근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주요 수산물 (명태, 오징어 등) 고갈 등으로 수산자원 관리 필요
 - * ('08) 128만톤 → ('14) 106만톤 → ('17) 93만톤 → ('18) 103만톤

□ 대외여건

- (시장규모) 세계 낚시용품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3% 이상 성장 중이며, '18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138억불(14조원)으로 추산
- (전망) '1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4**% 성장과 **26억불(3조원) 추가** 확대 전망

【세계 낚시용품 시장 전망 】

* 낚싯대, 낚싯줄, 릴 등 직접 도구만 추산(영국 Technavio 세계 낚시 시장 전망)

글로벌 동향

□ ■ [미국] 「낚시현대화법」 추진을 통한 낚시산업 발전 촉진

- o 낚시산업의 중요성 증대로 낚시산업 진흥을 위해 「낚시현대화법」추진
- 상업적 어업과 비상업적인 낚시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법으로 **어업과** 차별화된 낚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 정책 수립
- o 낚시는 기존 상업적 어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여러 제약이 존재하 였으나 법 추진을 통해 연간 어획량 제한 등 규제 완화
- 낚시의 **어획량 제한 규정 삭제**에 따라 **낚시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전망되나, 일각에서는 **수산자원 남획**에 대한 **우려도 존재**

② ■■[프랑스] 낚시연맹 주도의 민물낚시 관리

- o 「수생태계법」에 의거 민간단체인 **낚시연맹을 낚시관리 단체로 지정**, 프랑스 전역의 **내수면 낚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
- 낚시연맹은 3,700개의 **수생태계 보호협회**, 94개의 **지역 낚시** 및 **수생태계보호연맹**, 9개의 **하천연합**, 13개의 **지역협회** 활동 **총괄**
- 기금 관리, 낚시 발전 및 홍보, 수생태계 보호 및 관리, 낚시 관련 통계조사, 낚시면허제 관리, 낚시 관련 단체 조직화 등의 임무 수행
- o 정부, 낚시연맹, 연구기관이 낚시 여건 및 문제점 진단 후 4대 목표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낚시발전계획" 수립
- 4대 목표는 낚시 접근 기회 개선, 낚시 수요 대응, 낚시교육 및 관광 육성, 홍보 강화로 설정

③ [중국] 레저어업 발전 촉진 정책 추진

- o 레저어업의 **공익적 측면 강화**하고 현대 레저어업 **문화 양성**을 위한 지침 발표
- 레저어업과 관련된 문화 공공서비스 플랫폼 설립, 레저어업 테마 공원과 어업특화 마을 연계 구성, 레저어업 인력 양성 등 추진
- o 낚시용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낚시산업 집중 육성
- **낚시용품 생산업체 42개소**가 **집적**되어 있는 위해임항경제기술개발 구에 낚시용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낚시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

4. 제1차 기본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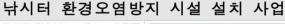
1 주요 성과

- □ (제도적 기반 마련)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등 낚시어선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 낚시도구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
 - *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16.5), 낚시도구 종류별 유해 물질 용출 허용기준 마련('16.11)
- □ (낚시문화 조성)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 캠페인 실시, 어린이 낚시체험교실 운영, 명예감시원제 시행** 등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노력 전개
 - * 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 교육 확대(「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16.11)
 - ** 명예감시원제도 시행('16~) 및 감시원 100명 활동 전개



- □ (낚시환경 조성) 비관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및 쓰레기 수거함·화장실 설치 등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추진
 - *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 : ('16) 757톤 → ('17) 998톤 → ('18) 831톤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











- □ (낚시용품 수출지원) 우수 국산 낚시용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위해 낚시용품 생산업체의 국제 낚시박람회 참가 지원*
 - * 일본, 중국 등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관련 2억원 지원('19)

2 한 계

- □ 국민 대표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낚시사고 발생***으로 낚시 산업 활성화보다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 추진**
 - 세계 낚시용품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기술·자본 경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규모화 미흡**
 - * 낚시용품 생산업체 363개소 중 10인 미만 종사업체가 전체의 86% 차지
- □ 낚시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과실 인식 부족 등으로 **낚시 관련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
 - * 낚시어선 인명피해 및 사고건수: ('14) 9명, 86건 → ('17) 105명, 263건
 - 특히,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나, 현장
 에서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
 - 또한, 최근 낚시터의 사고 발생 사례는 없으나, 불법 운영·무단 중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 적발
- □ 낚시인구 증가로 인해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어업인·지역민과의 갈등*심화
 - * 수산자원 이용 경합 및 쓰레기 발생으로 어업인의 생존권, 지역민의 정주권,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이 대립
- □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 및 낚시인의 자율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시스템 미구축**으로 규제 위반 만연 및 정책 추진력 약화
 - * 산림청이 국립등산학교 운영을 통해 대국민 등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낚시학교 부재로 체계적인 대국민 낚시문화 교육에 한계
- □ 가족단위 낚시 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 공간**과 **인프라 부족**
 - *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숙박업소, 식당, 매점, 화장실, 낚시용품점 등), 접안 시설 등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련 시설의 노후화

(참 고) "제1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주요	2 추진 내용	성과
1.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	 낚시 관련 법 정비 낚시 관련 통계 구축 낚시정책 거버넌스 구축 낚시쿠폰제, 환경부담금 등 낚시관리제 도입 검토 	■ 법률과 기본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낚시 관리 정책 도입 - "제1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 낚시 제한 기준 마련(주꾸미 금어기) -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유해 낚시도구 기준 보완
2.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 ■ 낚시포털(낚시누리) 활성화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 낚시인 대상 수산자원 보호 캠페인 실시 - 어린이 낚시체험교실 운영 - 낚시정보종합포털(낚시누리) 콘텐츠 보강 - 업계 대상 전문교육 강화
3. 명품 낚시 공간 구축을 통한 어촌 소득 기반 창출	■ 낚시터·낚시어선 편의시설 구축 지원 ■ 우수낚시터 제도 활성화 ■ 낚시타운 조성 ■ 낚시자원 조성·관리	 막시 활성화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 추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상낚시복합타운 필요성 검토
4. 수출 진흥· 관광산업화를 통한 낚시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 ■ 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박람회 참가 지원) ■ 낚시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	 ■낚시용품 수출 지원 및 친환경 낚시산업 육성 노력 - 유해 낚시도구·미끼 기준 및 세부 검정절차 마련 -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지원 - 바다여행 사이트와 연계를 통한 낚시 관광객 유치

Ⅳ. 정책방향

비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낚시산업'

기본 방향

- ① 국민 모두가 가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낚시 환경 실현
- ②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
- ③ 미래세대를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기업]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 1. 낚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 2. 낚시 관련 산업 R&D 지원

[국민]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 3. 낚시교육 인프라 확보
- 4. 국민 대상 교육·체험 강화
- 5.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어촌]

행복한 낚시 공간 확충

- 6. 낚시 인프라 조성
- 7. 낚시 활동 활성화 지원

[낚시어업인]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 8.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9.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

기 대

효

과

2020년 현재(AS-IS)

- ❖ 낚시 안전사고 증가
- ❖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우려
- ❖ 낚시 인프라 및 공간 마련 미흡
- ❖ 낚시용품 수출 부진 및 업체 영세화



2024년 까지(TO-BE)

- ❖ 낚시 안전문화 정착
- ❖ 낚시 자원 관리
- ❖ 지역경제 활성화
- ❖ 낚시용품 수출 확대 및 규모화

II 10 I TE TE X B II O

Ⅴ. 세부 추진과제

1.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가. 낚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 낚시 어획량 조사 (통계청 협업)

- 어업인과의 분쟁 해소와 지속가능한 낚시 활동을 위해 낚시로 인한 조획량 확인 등 낚시 정책 수립·활용을 위한 낚시어획량* 조사 추진(′20~)
 - * 현재는 일부 연구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어획량 추정 결과로 신뢰도가 부족한 상황
- 통계청과 협업하여 낚시 인원, 어종별 어획량, 임차료, 월 낚시 횟수 등 낚시 관련 정량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 조사 실시
 - * 낚시 어획량 시범조사 실시('20) →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본 사업 추진(통계청과 협력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관리)

□ 낚시산업 실태조사

- 지역별 낚시산업 규모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육성방안 모색('20~)
- 낚시산업 현황 및 산업규모, 수산자원 이용, 낚시비용* 등 조사 및 분석, 지역관광산업과 연계된 낚시산업 발굴
 - * 미국에서도 낚시 분야 국가조사(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 Associated Recreation) 실시(여행비, 장비비 등 낚시 관련 지출금액 조사)

【낚시산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유형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낚시인구
	• 낚시 출조비용 및 출조횟수
낚시실태조사	• 어종별, 시기별 포획량
	• 낚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식도, 만족도 등
	• 낚시 안전사고 및 취약 실태 조사

나. 낚시 관련 산업 R&D 지원

□ 낚시용품 기술개발 (산업부 등 협력)

- 국내외 낚시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낚시용품 및 장비는 대부분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산화로 국내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경쟁력 확대 추진 필요
 - * 낚시용품 산업은 과거 15대 수출 육성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산업적 중요성이 매우 큰 산업('96년 무역 흑자 규모 376백만\$)이었으나, 일본 등 선진국과는 기술과 자본경쟁, 중국과는 가격경쟁에 밀림
-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용품 주요소재(탄소 섬유 등) 및 낚시 용품 연구 개발 추진('20~)
 - * 기획연구('20) → 기재부 예산 요구('21) → R&D 추진('22~)
- 또한,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낚시용품 자동공정 시스템을 개발 하고 연구개발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성 평가 및 상용화 전략 구축

R&D 개발 주요 내용(안)

- 국내외 낚시용품 및 소재개발 현황 및 성공사례 분석
- 낚시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수요맞춤형·친환경 낚시용품 및 소재 개발
-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한 낚시용품 및 소재 자동공정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 제품의 경제성, 시장성 평가 및 상용화 전략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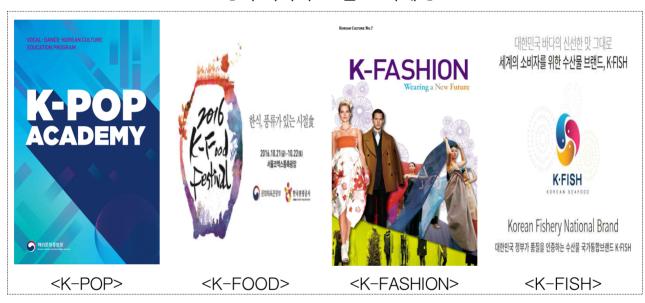
□ 국내·외 박람회 지원 확대

- (해외 박람회)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낚시용품 생산 유망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 마케팅 지속 지원('18~)
 - * (세계 3대 낚시용품 박람회) 북경·미국·유럽 낚시용품 박람회
- (국내박람회)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의 낚시박람회 개최 지원(예산 확보 필요)
 - 민간 추진 박람회와 병행 정부 주도의 국내 낚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국내 낚시용품 전시 및 홍보 추진

□ 낚시 통합 브랜드화(가칭 K-Fishing) 추진 (중장기 추진)

- (브랜드 개발) 우리나라 낚시용품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브랜드(가칭 K-Fishing)를 개발
 - * K-POP(음악), K-FOOD(음식), K-FASHION(패션), K-BEAUTY(미용) 등
 - 제품별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단일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
- (**브랜드화 지원**) 대표 수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기준 적용, 마케팅 등 지원 검토

【 우리나라 브랜드 사례 】



□ 국내 낚시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장기 추진)

- **(수출지원센터)** 낚시용품의 수출 확대와 주요 수출국별 현지 거점 구축을 위해 현지에서 낚시용품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 수협의 수산물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낚시용품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 (인큐베이팅) 수출초보기업 '인큐베이터'*,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등 지원
 - * (인큐베이터) 1년 간 사무공간, 법률·통역 자문, 판로개척 등 지원(현지지사 기능)
 - ** (비지니스센터) 단기간 출장 시 사무공간 등 제공(단기 출장소 기능)

2.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가. 낚시교육 인프라 확보

□ 맞춤형 낚시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그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낚시의 대중화에 따라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관련 수요 증가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를 선도하는 낚시 활동과 낚시문화를 겸비한 낚시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낚시 장소 및 어종, 방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세분화 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낚시인 교육프로그램(안) 】

구분	교육프로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	■쉽게 배우는 모바일 낚시교육 ■OO지역 낚시교실 ■시민낚시안전교실	■ 찾아가는 낚시교실 ■ 낚시체험 학교 ■ 선상낚시 체험교실					
교육대상	■ 초보낚시인 교실 ■ 고수낚시인 교실(심층낚시 교실) ■ 낚시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 낚시리더 및 교사 연수	■ 영유아 낚시교실 ■ 청소년 낚시교실 ■ 일반성인 낚시교실					
교육내용	■ 민물낚시교실 ■ 바다낚시교실 ■ 돌돔 전문낚시 교실	■ 붕어 전문낚시 교실 ■ 루어낚시 체험 교실 ■ 낚시도구 활용 교육					

□ 낚시인 교육 전문강사 양성 (중장기 추진)

- 낚시인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전문 교육강사 육성을 위한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또한, 낚시인 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낚시인 교육 전문가 자격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단기) 낚시인 전문교육강사 육성과정(연간 4회, 회당 50명)과 연수형태의 기간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장기) 법률 개정을 통해 낚시인 교육전문가 인증제도 도입

나. 국민 대상 교육체험 강화

□ 국민 대상 낚시 체험교실 추진

-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인 교육프로그램을 기반 으로 낚시를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낚시 저변확대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낚시 체험교실 확대 추진
- 자원관리·안전 중심 낚시 활동의 조기 교육을 위해 낚시체험 대상을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권역별 개최
 - * 계절별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낚시 체험교실 마련 및 운영

【낚시 체험교실 】







□ 낚시학교 설립 (중장기 추진)

- 청소년을 비롯 일반인, 전문 낚시인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낚시사고를 예방하는 배움터인 낚시학교 설립 추진
- 가족·청소년·소외계층 등 다양한 국민에게 체험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낚시교육 메카로 육성
 - * 국립 낚시학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0)

【 유사 사례(국립 등산학교) 】





다.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 쓰레기 투기 방지 및 환경개선

- (법적 기반 마련) 낚시 활동 중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 하여 해양환경 오염 예방('20.2~)
- (정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연안 주요 낚시 지점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등 오염물질 정화 활동 추진('20~)
 - *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시 병행 추진
- (지자체) 비관리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화장실 설치 등 환경정화 사업(지자체 이관) 지속 추진
 - * '20년부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19년, 6.6억원)은 지방으로 이양

□ 지속가능한 낚시자원 조성

- 낚시대상 주요 어종(감성돔, 조피볼락, 농어 등)에 대한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동 어종이 서식하기 적합한 어초 설치 등 추진
 - *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종자방류와 인공어초 투하 등의 자원조성시설 건립을 활용하여 낚시자원 조성·관리
- 또한, 지자체와 지역 민간단체(낚시어선협회 등)가 연계하여 종자방류 및 해양쓰레기 수거행사 공동 개최 등 자발적 추진

□ 낚시 안전 지킴이

-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낚시 안전 지킴이 지정 및 운영('20~)
 - 낚시인 등 민간이 참여하여 갯바위, 방파제 등 낚시터와 낚시어선에서 일어나는 안전관리, 환경오염 및 낚시정책 등 홍보·계몽
- ㅇ 낚시 관련 홍보와 연계 및 낚시해(海) 앱을 활용한 실적 보고 추진

3. 행복한 낚시 공간 확충

가. 낚시 인프라 조성

□ 낚시 관리구역(가칭) 도입

- 바다·내수면의 일정 해역을 설정하여 어획량 제한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낚시 관리구역(가칭) 제도 도입 검토
 - *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수산자원 과다이용(주꾸미 등 일부어종), 해양 환경 오염 문제, 지역민과 마찰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엄격한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어획량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낚시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 확대 및 금어기 적용 제외 등 규제부담 경감 추진
-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이 있는 일부 해역에 도입하고 타 업종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도입
 - * 영업구역 바깥쪽 해역에서의 운항은 낚시전용선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안 병행 검토

【 단계별 추진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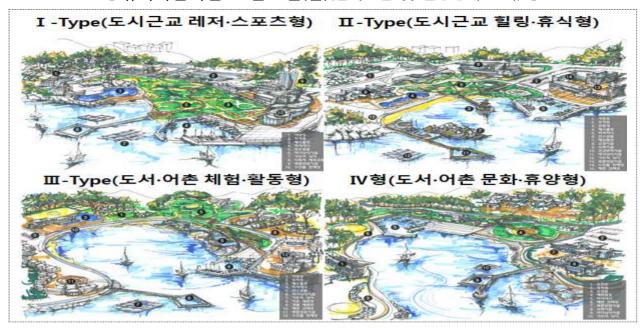
1단계('20)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 2단계('21)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법률 개정 추진

3단계('22~) → 낚시 관리구역 지정

□ 낚시복합타운 조성

- 가족단위 레저활동으로 변하고 있는 낚시 트렌드 변화에 맞춰 체류형 복합 낚시공간* 조성(권역별 조성, 예산 확보 필요)
 - * 낚시시설 등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부족한 레저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해변리조트나 휴양지와 같은 기능도 포함
 - ** 지자체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하되 입지조건, 활동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에 필요한 표준모델 제시
- ㅇ 또한,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내수면 낚시공원 조성
 - * 농업용 유휴저수지를 내수면어업과 체험·휴식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 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

【낚시복합타운 표준모델(안)(입지조건 및 활동형태 고려)】



□ 낚시 전용 접안시설 등 확충

- (국가어항) 특화어항 개발시 낚시어선 이용객 등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전용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대국민 안전 및 서비스 제고
 - 또한, 접안시설과 연계하여 이용객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 * (다기능어항) 관광·휴양·마리나·낚시 등 기능이 추가된 다대포·욕지항 등 10개항 (아름다운 어항) 어항의 자연경관과 어촌마을의 문화·예술을 융합한 4개항

【 낚시어선 접안시설용 부잔교(예시) 】



- (지방어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바다낚시터, 낚시잔교 등을 확충하여 이용 편의성 확보
 -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 포구 등
 - 인천 소무의항 등 약 15개 어항(사업비 250억원) 바다낚시공원, 어린이 낚시장 등 조성(미정)

나. 낚시 활동 활성화 지원

□ 우수낚시터 제도 활성화

- o 우수낚시터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낚시터업의 시설· 서비스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유도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낚시터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21~)
 - *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사위원의 현장평가로 진행하며, 평가항목의 단순화 정량화를 통해 객관성 등을 확보
- ㅇ 또한, 지역별 낚시터 분포 등을 고려한 선정방안과 동기 유발을 위한 인센티브(홍보 및 예산 지원 등) 확보 방안 마련

【 우수낚시터 제도 추진 방향 】

구분	내용
단계별 제도정착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높으므로 단기에 제도가 도입 되고 점차 참여확산 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형평성 있는 지정	지정을 위한 기준 및 평가의 단순화 지역 및 형태, 규모를 고려한 지정기준의 도입
현실성 높은 지원	제도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현실적 인센티브 확보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

□ 낚시대회 및 축제 지원

- ㅇ 지역별 대표 낚시대회와 축제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낚시활성화(예산 확보 필요)
- ㅇ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한 강마을과 내수면 낚시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낚시대회 및 축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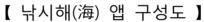
<화천 산천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단양 쏘가리축제> <봉화 은어축제>

4.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낚시해(海) 앱을 통한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시범운영(5개소) 중인 낚시해(海) 앱을 전국 모든 낚시어선('18년 기준 4,543척) 대상으로 승선자 관리체계 구축('20.上~)
 - 실시간 승선자 명부 및 출입항 정보 전송으로 체계적인 출입항 관리와 비상시 승객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 또한, 민간 낚시예약 앱에서 예약과 동시에 출입항 신고까지 가능토록 낚시해 시스템과 공유 추진
 - 낚시해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을 준수하는 민간업체에 낚시해(海) 시스템과 연계
 - * 보안키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암·복호화를 통한 오픈API방식과 우리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연계 검증 테스트 및 승인방식 적용





□ 낚시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 어선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영업구역 위반 여부를 실시간 모니 터링하고 사전경보 등이 가능토록 운영 추진
- 조업 위반 차단을 위한 디지털 중단파망 구축 사업시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과 연계**('20~)
 - * 기지국 3개소 설치('19) \rightarrow 통신장비 보급('20 \sim)

□ 인적과실 저감

- 선장 경험부족(풍랑·지형지물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선장자격(승선경력無→ 2년 이상 승선) 강화('20~)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등 제재 도입 및 재진입 제한('20~)

□ 선박검사 및 안전설비 강화

-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해에는 별도 낚시어선 안전검사(부식·파공 등 선체검사, 기관시험 등 점검) 의무 추진('20~)
 - * 현재는 5년마다 정기검사, 2~3년 사이에 중간검사 실시
- 선박 전복 등 대비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 및 선실 내부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확보(신조) 의무화('20~)
-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토록 의무화('21.2)
 - ※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불시 안전점검(비노출 점검) 등을 강화하고 지도・ 점검 내실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20.下)

□ 낚시어선업자 대상 전문교육 강화

- (실습 교육 강화) 이론 주입식의 교육에서 실습형 교육으로 개편 하고 수준별 특화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20~)
 - * 해도 정보 이용법, AIS·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 방법, 항해와 관련된 법규 교육 등
- (신규 진입자) 최초 진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 낚시승객 안전 관리 등 낚시어선업 영업에 필수적인 전문교육 실시('20.2~)
 - $_{*}$ (현행) 낚시어선업자 매년 4시간 강의 이수 \rightarrow (개선) 신규자 전문교육 추가
- (**사고발생자**) 고의·중대과실로 승객사망 등을 초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낚시어선업자가 영업재개시 사전교육* 이수토록 개선('20.2~)
 - * 사고사례, 승객구조・응급처치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등 체험・참여형 교육 시행

나.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

□ 해상 낚시터(일정 규모 이상) 구명뗏목 등 추가 배치

-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 일정 거리(육지에서 1마일)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정 규모(수용인원 80명) 이상의 낚시터는 구명뗏목 또는 부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 발굴 추진
 - * 현재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낚시터에 관리선 1척만 보유토록 규정

□ 낚시터 안전성 검사 효율성 제고

- 낚시터 재검사 시기와 소방·전기 등 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 * 낚시터 안전성 검사는 '선박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수행 하고 있으나, 소방 및 전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

□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낚시터 방류 수산물은 국내산(국내 양식장)과 수입산*(이식승인)이며, 국내산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추진 중
 - * 수입절차 : 낚시터 방류용 이식승인 신청(신청인 → 수과원) → 이식승인 (수과원→신청인, 수품원) → 수입 → 임상검사/정밀검역(수과원) → 통관
 - 수입산은 이식승인 제도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정 미적용*
 - * 낚시터방류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식약처)
- 나시터방류용에 대한 이식승인제도 실효성을 검토하여 수입단계에서 안전성조사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생태계 교란, 질병발생 우려가 적은 육상 해수낚시터와 실내낚시터는 수산 자원 이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사용 중인 식용 검역 어종을 허용 하는 방안 등 종합적 검토

Ⅵ. 향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세부추진내용

일정

1.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가. 낚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 ① 낚시 어획량 조사 (통계청 협업)
- ② 낚시산업 실태조사
- ·낚시 어획량 시범조사 실시 ·낚시 어획량 본 조사 추진
- ·낚시산업 및 안전분야 실태조사 실시

′20~ ′21~

′20~

나. 낚시 관련 산업 지원

- ② 국내·외 박람회 지원 확대
- ③ 낚시 통합 브랜드화 (가칭 K-Fishing) 추진
- ④ 국내 낚시용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낚시용품 주요소재 및 낚시용품 연구개발 추진(산업부 등 협력)
- ·해외 낚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국내 낚시박람회 개최 지원(예산확보 추진)
- ・낚시용품 단일 브랜드(가칭 K-Fishing) 개발
- ·대표 수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 현지 낚시용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 ·낚시용품 수출 초보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20~

- 계속
- ′21~ ′22~
- (중장기) '22~
- (중장기)
- '23~ (중장기)
- '23~ (중장기)

2.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가. 낚시교육 인프라 확보

- ① 맞춤형 낚시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낚시인 교육 전문강사 양성
- 맞춤형 낚시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낚시인 전문 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 ·낚시인 교육전문가 인증 관련 법률 개정
- ·낚시인 교육전문가 인증제도 도입

′21~

'21~

'22~ (중장기)

'23~ (중장기)

나. 국민 대상 교육·체험 강화

① 국민 대상 낚시교실 추진	·낚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범사업)	′20~
② 낚시학교 설립	·낚시학교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
	·낚시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	'21~'22
	·낚시학교 설립 및 운영	′23~
		(중장기)

다.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법적 근거 마련 환경개선 사업 추진	'20~
① 쓰레기 투기 방지 및	· 연안 주요 낚시지점 환경개선(정부)	'20~
환경개선	·비관리 낚시터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추진(지자체)	계속
② 지속가능한 낚시자원 조성	·낚시 주요어종 방류사업 및 민관 협력 추진	′21~
③ 낚시 안전 지킴이	·낚시 안전 지킴이 지정 및 운영	′20~

3. 행복한 낚시 공간 확충

가. 낚시 인프라 조성

① 낚시 관리구역(가칭) 도입	·낚시 관리구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0~
	·낚시복합타운 조성 예산확보 추진	′20~
② 낚시복합타운 조성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과 연계한 내수면 낚시공원 조성	′20~
③ 낚시 전용 접안시설	· 특화어항 개발시 낚시 전용 접안시설 확충	′20~
등 확충	· 어촌뉴딜 300과 연계 낚시 인프라 조성	′20~

나. 낚시 활동 활성화 지원

① 우수낚시터 제도 활성화	· 우수낚시터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마련	'21
	· 우수낚시터 지정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 마련	′22~
② 낚시대회 및 축제 지원	·지역별 대표 낚시대회와 축제 개최 지원	′20~

4.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① 낚시해(海) 앱을 통한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낚시해(海) 앱 활용 승선자 관리체계 구축	′20~
	・민간 낚시예약 앱과 낚시해(海) 앱 연계	′20~
② 낚시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낚시어선 실시간 위치 정보 모니터링	′20~
	·디지털 중단파망 구축사업과 낚시어선 영업 구역 위반 연계	′20~
③ 인적과실 저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 선장자격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도입 등	′20~
④ 선박검사 및 안전설비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 안전성검사 의무화 및 구명뗏목 설치 등	′20~
② 낚시어선업자 대상 전문교육 강화	·낚시어선업 신규 진입자, 안전사고 발생자 전문교육 추가, 실습교육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20~

나.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

① 해상 낚시터	·해상 낚시터 구명뗏목 추가 배치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	′20~
구명뗏목 등 추가 배치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개정	′21~
② 낚시터 안전성 검사 효율성 제고	·낚시터 검사 주기 및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 추진	′20~
③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낚시터 방류용 이식승인제도 실효성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
안전관리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	′21~